

변경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1. 펀드명 :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I 수익증권 신설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4 년 05 월 24 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3. (생략) (신설)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종류 I 수익증권</u> : <u>고액거래자용(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)</u>
제 10 조(수 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을	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을

		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~13. (생략)	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~13. (현행과 같음) <u>14. 종류 I 수익증권</u>
제 37 조(보수)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생략) (신설)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 <u>[종류 I 수익증권]</u> 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0</u> 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</u> 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</u>
부칙	-	(신설)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4 년 05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펀드명 :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:

- 종류 I 수익증권 신설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4 년 05 월 24 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-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(신설)	<u>종류: 고액(I)</u> <u>집합투자기구의 특징: 납입금액이</u> <u>5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</u> <u>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1. 펀드명 :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I 수익증권 신설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4 년 05 월 24 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-	집합투자기구의 명칭: I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투자 펀드코드: EC232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-	집합투자기구의 명칭: I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투자 펀드코드: EC232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정보 업데이트	-	2024 년 05 월 24 일: - 종류 I 수익증권 신설
6. 나. 종류형 구조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-	종류: 고액(I) 집합투자기구의 특징: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11. 가. 2) 종류별 가입자격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-	종류별: I 가입자격: 고액거래자용(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)
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	종류 I 수익증권 신설	-	종류형 명칭: I 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고액투자 선취판매수수료: 없음 후취판매수수료: 없음

부과되는 수수료			
13. 나.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종류 수익증권 신설	-	<u>종류형명칭: 수수료미징구-</u> <u>오프라인-고액투자</u> <u>집합투자업자보수: 0.100</u> <u>판매회사보수: 0.050</u> <u>수탁회사보수: 0.015</u>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10</u> <u>총보수: 0.175</u>
13.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	종류 수익증권 신설	-	<u>종류형명칭: 수수료미징구-</u> <u>오프라인-고액투자</u> <u>1 년: 18</u> <u>2 년: 37</u> <u>3 년: 57</u> <u>5 년: 99</u> <u>10 년: 226</u>